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
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우경란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40호로 2023년 5월 4일 우경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진로·진학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영등포구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교육 및 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미래 설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진로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3. 5. 2 ~ 5. 6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진로·진학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영등포구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교육 및 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미래설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5조(기능 등)에서 현행 조례상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진로·진학 등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정보의 제공을 추가함.

○ 검토 결과

우리 구는 2014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개관한 이후 지원센터 내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와 대학입학 정보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‘진로탐색-학습 역량강화-진학’을 결합한 원스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음.

본 개정조례안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추가하여 진로·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에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한 개정이라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진로교육법

- 제4조(진로교육의 기본방향)**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.
-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제18조(진로체험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진로체험기관”이라 한다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